

세무회계저널
제7권 제4호 2006년 12월 pp.109~131
한국세무학회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박태승*

<요 약>

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 중 46.4%에 해당하는 인원이 아직도 무기장자로서 추계신고과세 방법에 의존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2005 국세통계연보). 추계신고과세는 근거과세와 자진신고를 기초로 하고 있는 소득세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제도로서 조세형평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 귀속분 소득신고부터 표준소득률제도 대신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에 의한 추계과세제도와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를 혼합한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지난 40년간 적용해온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추계신고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였다.

첫째로, 비록 근거과세를 위한 과도기적 제도로서 기준경비율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나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에서의 주요경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규증빙 수취를 강화하고, 소득상한배율을 폐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선호 유인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소득세법상의 간편장부대상 기준금액 범위를 축소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서로 일치시킨 후 그 기준금액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금액으로 점차 축소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법상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이행 의무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로, 기준경비율제도는 경비측면에서 증빙수취와 기장을 유도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원천적인 수입누락의 경우 제도가 의도한 대로 작동될 수 없다. 따라서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의 세원이 먼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수입(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소득신고 누락시 추계조사방법으로는 순자산증가법, 현금지출액법, 은행예금잔액법 등을 도입하여 범문화하고, 기준경비율은 납세자의 신고기준이 아닌 국세청 내부 과세참고자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기장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부기장수수료에 해당하는 정액기장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장세액 공제율을 인상하여야 하며, 무기장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간편장부의 개선으로 기장에 근거한 납세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주제어> 소득세추계신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장부의 기장과 비치, 기장세액공제, 추계조사 방법

* 경북대학 세무회계정보과 부교수, taeseung7@yahoo.com, 018-278-0148

I. 서 론

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상당한 인원이 추계조사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귀속 소득세 신고인원 중 약 46.4%가 무기장자로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바 있다(2005 국세통계연보). 추계방법에 의한 신고란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때에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등에 의해 추계방식으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¹⁾ 이와 같은 추계방법신고의 일반화는 소득세의 일반적인 확정방식인 신고납세제도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기장사업자와의 조세형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장을 유도할 수 있는 소득세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부득이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능부담할 수 있도록 실액에 근접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근본원칙은 근거과세의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16조).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무기장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2소득 귀속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법(소규모사업자인 경우 단순경비율법)에 의해 추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0조). 기준경비율법은 추계방법이 매우 간편하고 납세의무자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오히려 무기장을 조장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도 추계사업자이므로 불성실혐의가 있으면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축소 및 비용과다 계상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세무조사도 병행할 방침에 있다. 국세청에 의하면 특히 47만 3천명에 이르는 복식부기의 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로 간주하여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입금액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게 된다(2003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요령). 그러나 추계신고의 일종인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면서 세무조사와 가산세의 부담으로 기장을 유도하는 것은 근거과세와 사업자간 조세형평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한 현실이다. 사업자의 음성탈루소득은 조세형평의 측면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왔으며, 음성탈루소득은 매출의 누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의 전액노출을 전제로 한 현행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제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선진외국과 달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해 실질소득을 반영하였는지 관계없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음성탈루소득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근거과세를 전제로 하는 자진신고 소득세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확실적인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탈피하여 장부기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탈루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 기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즉,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대폭 축소 내지 일정기간 경과 후 폐

1) 신고납세제도인 소득세제에서는 '추계조사결정'이 법정 용어이다(소득세법 제80조). 그러나 실무적으로 장부기장이 어려운 일부 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포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되므로 (정부의)추계결정(reconstruction of income)과 (납세자의)추계신고(tax return by estimation)가 혼용되고 있다.

지하고, 순자산증가법, 현금지출액법, 은행예금잔액법 등 새로운 추계과세기법을 도입하여 추계신고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사업자간(기장사업자와 무기장사업자), 직종간의 조세형평을 제고하고, 기장확대를 유도하여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소득세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납세자에 의해 선택되고 세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추계신고제도가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지 또는 과도기적으로 유지하고 폐지해야 하는지, 신고납세제도에 걸맞는 기장제도를 확대하려면 어떤 유인이 필요한지, 고소득탈루혐의자에 대한 효율적인 추계과세방법은 어떻게 제도화해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적으로는 실증자료를 통해 추계과세신고로 인한 탈루소득의 규모나 세무조사 시 적출비율을 기장신고의 경우와 비교하여 추계과세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도 있으나, 이 분야에서의 공개된 자료가 극히 한정되어 실증적 자료분석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전단계로서 국세통계자료와 판례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추계과세방법(우리나라의 추계신고제도와는 다른 개념임)과 기장의무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현행 추계과세제도의 배경과 선행연구를 개관한 후, 제III장에서는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실태를 각종 조세통계자료와 사례를 통해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검토한 후 제IV장에서는 2002년 귀속 신고소득부터 처음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위주로 하여 현행 소득세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II.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1. 우리나라의 추계과세제도의 개관

가. 기준경비율제도

우리나라의 추계과세제도의 대표적인 제도의 하나인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 도입된 이래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관서의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소득추계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가 장부나 거래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 없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여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소득금액이 업종별 평균소득률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산출되므로 사업자의 개별실상이 반영되지 못하여²⁾ 사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도 갖고 있는 제도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귀속 소득신고부터 표준소득

2) 박춘래·김종원(2003)은 기장능력의 부족, 기장비용의 절감, 국세청의 표준소득률이 납세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소득율보다 낮게 결정될 때 등의 이유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를 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과 주요경비 이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³⁾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나. 단순경비율 제도

무기장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인 경우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⁴⁾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06년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자(도·소매업은 72백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은 48백만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36백만원 미만자)에 적용한다.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다. 배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하는 취지로 배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이 제도는 2007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⁵⁾ 배율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매년 결정한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소득상한배율}$$

소득상한 배율의 변화는 최초 1.2(2002년 귀속소득분)에서 1.4(2003귀속분), 1.5(2004귀속분), 1.7(2005귀속분)로 점차 상향조정되고 있다.

3) 기준경비율은 ①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자료에 의해 이론적 기준경비율 산정 ②세무사가 기장한 업체가 실제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기준경비율 산정 및 표본조사 ③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및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자료에 의한 경비구조 파악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국세청).

4) 2003년에 제정한 2002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종전의 표준소득률수준[1-표준소득률]으로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실제경비율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국세청. 2003소득세 확정신고 관련요령).

5)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부칙 제2조에서 3년간(2002~2004)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2006.2.9시행령 개정시 배율제도의 적용기간을 다시 2007년 말까지 연장하였다(소득세법시행령 143조 제3항).

2. 소득세 추계과세의 법적근거와 입증책임

소득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장부기장이나 추계방식에 의해 자진신고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를 택하고 있다. 정부의 결정, 경정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장부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야 하나,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과세제도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어서 소득실액을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개인성에 의하여 실액근사치의 파악으로 만족하고 과세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편차가 생기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국세청, 2003소득세 확정신고요령). 따라서 추계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해 일단 입증되었을 때에는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증책임의 전환)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본다(대법 86누121, 1988.5.24 및 대법96누12504, 1997.9.9). 현행세법에서는 추계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수입금액인가 또는 소득금액인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추계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다.⁶⁾

추계과세제도의 법적타당성에 관한 견해는 제한설과 예시설이 대립되어 있다.

가. 예시설

실정세법에 정하여 놓고 있는 추계방법들은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정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추계방법도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제한설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추계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실정세법에서의 규정들은 추계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행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계과세방법에 관한 규정은 제한적·한정적인 의미를 갖는 제한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제한설의 입장에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추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91누12721, 1992.4.10, 및 대법85누426, 1985.10.8). 결론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결정의 최후 선택이 되며⁷⁾,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되고 합리성에 의해 밀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이태로·안경봉 1999, 238-239).

3. 선행연구의 검토

박찬웅(2005)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의 개정에 따른 과세효과를 납세자의 조세순응도와 국제

6)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소득금액추정), 동 법령 제144조(수입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소득금액추정), 동 법령 제105조(사업수입금액계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7) 대법 85누859, 1987.3.10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3항. 판례에 의하면 추계결정의외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이 실액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추계 결정할 수 있다.

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사회적비용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Rhoades(1999) 신고모형에 의거 분석하였다. 표준소득률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준경비율제도는 기장신고와 표준소득률제도의 중간적인 과세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도기적인 의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표준소득률이나 기준경비율을 신고소득금액 조절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국중호(2002)는 기장세액공제가 기장신고납세를 증가시키고 무기장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신고납세를 저해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추계과세제도 및 기장유인제도가 신고납세와 과표양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세정개혁방향으로서 기장유인제도의 활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기장 추계과세제도를 없애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장세액공제의 효과는 현실적인 한도적용(납부세액의 10%이나 100만원 한도)으로 인해 무제한일수 없으며, 기장수수료 등의 납세자비용을 간과하고 있다.

서희열·허양원(2000)은 소득간 불평등에 대한 문제이전에 원칙적으로 과세권에서 누락되는 소득을 양성화시키는 방안과, 일정한 소득이 없이도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납세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과세방안을 연구하여 프랑스의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추계과세제도의 도입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 제도의 적용상의 한계점도 언급하고 있다.

정운오(1995)는 소득세 추계과세제도를 게임이론적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형의 parameter들이 납세자의 자진신고율과 국세청의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납세자의 장부기장에 관한 두가지 세법규정(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의 경제적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소득세 자진신고제도 도입이전의 연구로서, 기장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적다면, 추계과세제도를 실시할 유인이 없음을 밝히고, 가산세 보다는 기장세액공제제도가 정책적인 실효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분석 보다는 실무적, 조세정책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첫째, 2002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 도입이후 과연 추계신고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소득세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조세공평성측면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구체적인 추계과세기법의 실무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기준경비율제도의 대안으로서 기장제도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소득세 추계과세 실태

1. 근거과세와 추계과세의 구성비율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추계결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장사업자와의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소규모사업자의 기장능력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근거과세의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소득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두었으나 예외적으로 소득상한배율(단순경비

율의 1.5배)제도를 도입하여 기준경비율제도 조차 유명무실해 지게 되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세무사가 기장을 하고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168개 업체 중 112개 업체(66.6%)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보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기장사업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일부 업종 등은 기장에 의한 세 부담 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기장을 통한 소득세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한국세무사회, 기준경비율 관련 건의내용, 2003.5).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준경비율제도를 폐지하여야 하고, 개인별 실상과 기장에 근거한 과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정부의 조세정책변화가 추계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연도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로는 소득세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된 1995년부터 1998년, 2단계로는 간편장부제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01년,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된 2002년부터 2004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제도적변화로 인해 추계신고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된 1995~1998년도를 보면 추계신고인원비율이 63.2%였으며 1999년도부터 도입된 간편장부제도의 도입으로 장부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여 1999~2001년도에는 55.6%로 감소하였고,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된 2002년~2004년도에는 49.5%로서 추계신고비율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조세정책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아직도 추계비율이 50%에 이르고 있어 기준경비율제도를 존치하면서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대유도하는 것은 상호모순된 정책과제로 보인다.⁸⁾

<표 1> 단계별 추계신고 인원비율의 변화

(단위 : 명)

	1단계(1995—1998년) 신고납부제도 도입		2단계(1999—2001년) 간편장부제도 도입		3단계(2002—2004년)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확정신고 인원	5,129,104	1,282,276	4,740,766	1,580,255	6,360,795	2,120,264
① 장부에 의한 신고	1,855,828	463,957	2,042,664	680,888	3,080,771	1,026,923
② 추계 신고	3,192,513	798,128	2,555,551	851,850	3,025,374	1,008,458
추계인원 비율②/①+②		63.2%		55.6%		49.5%
③ 비사업자	80,763	20,191	142,551	47,517	254,650	84,883

주) 1. 납세인원에는 분리과세소득자,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됨.

2. 확정신고인원에는 추계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는 제외됨.

3. 비사업자는 사업소득·부동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자임.

4. 평균치는 각 단계별 연간 평균인원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연도와 각연도

8) 추계신고보다 장부 기장시 불이익이 크고 세무조사대상을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기준경비율제도가 오히려 기장신고자를 이탈시킨다는 우려도 있다(조세일보, 2003.7.22).

2. 신고유형과 결정세액

<표 2>에서 보면 2004년 귀속 소득세 추계신고자는 비사업자를 제외한 신고인원의 46.4%를 차지하나 결정세액의 구성비는 18.6%에 지나지 않아 납세자간 세부담의 공평성이 의문이 제기되며 추계신고자는 기장신고자에 비해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추계신고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양성화 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⁹⁾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를 한 결과로 추정된다. 장부에 의한 신고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간편장부신고자가 2003년에 12.1%(2002년 대비), 2004년에는 24.9%(2003년 대비)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04년 장부에 의한 신고자 중 45.8%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추계신고대상자에게도 간편장부제도를 확대보급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절실하다.¹⁰⁾

<표 2>에서 추계신고의 경우 2004귀속연도의 1인당 결정세액은 약 1,113,000원이며, 기장세액 공제율인 10%를 곱하여 보면 기장세액공제액은 111,300원 정도로 추정된다.¹¹⁾ 위 추정 금액으로는 평균 기장수수료에도 못미쳐 기장세액공제가 기장 유인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하게 보인다. 소규모 사업자의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정액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이나 기장세액공제율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2>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인원과 결정세액(2002~2004년 귀속)

신고유형	신고 인원(명)			결정세액(백만원)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합 계	2,010,363	2,114,527	2,235,905	5,745,486	6,288,663	6,943,835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1)	918,803	1,018,068	1,143,900	4,024,494	4,389,805	4,833,127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462,719	514,187	542,249	3,535,608	3,914,421	4,292,873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81,652	84,328	77,714	156,246	152,209	146,419
－간편장부	374,432	419,553	523,937	332,640	323,175	393,835
○추계신고(2)	1,023,137	1,012,943	989,294	1,039,498	1,076,701	1,101,128
○비사업자	68,423	83,516	102,711	681,494	822,157	1,009,580
추계신고비율(비사업자 제외) =(2)/(1)+(2)	52.7%	49.9%	46.4%	20.5%	19.7%	18.6%

자료 : 국세통계연보, 2005

- 9) 성명재·전영준(1998)에 의하면 사업소득자들에게 대한 과표양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소득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는 근로소득세 경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 10) 정부는 성실납세제도(소기업 간편납세제도를 변경)를 도입하여 소규모기업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장부, 판매시점관리시스템, 입장권 통합전산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 2006.2.21)
- 11) 비교목적으로 2004귀속분 기장세액공제액(40,264백만원)을 간편장부신고자(523,937명)로 나누면 76,848원이 산출된다.

3. 소득세 불성실 신고혐의자 조사

국세청은 2003년 5월 소득을 낮춰 세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개인사업자 95,000명을 선정, 중점관리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소득세 탈루혐의자 수는 지난해의 47,000명보다 102.1%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가 세정개혁의 기치로 내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경제신문, 2003.5.23). 국세청 자료(2003소득세 불성실혐의자 중점관리)에 의하면 2001년도 공평과세 취약분야 등 중점관리대상자 47,000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 결과 소득세 신고실적이 크게 향상되었다(전체사업자는 113.2%이나 중점관리대상자는 134.9%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중점관리대상자는 2001연도의 전체 확정신고소득세 신고자(과세제외자 불포함)의 5.2%에 해당되는 인원이며¹²⁾ 2001연도 개인사업자 조사실적인원 6,347명(2002국세통계연보)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서, 중점관리자를 세무조사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성실신고유도에 큰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¹³⁾

IV.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준경비율제도

가. 소득상한배율제도의 폐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5배, 2004년 귀속분 기준)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4년 귀속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⁴⁾ 이는 제도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나, 1.5배로 정해야 하는 명백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호하게 되어 기준경비율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므로¹⁵⁾,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소득상한배율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증빙수취 의무를 확대 적용하도록

12) 미국에서도 소득세 신고서 세무조사는 매년 1%미만이나 고소득자(4%이상), 현금수입업종, 부동산거래자·증여자(15%~40%)는 집중 관리되고 있다(2003 West Federal Taxation, p.25-3).

13)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등 전국적으로 266개 조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집중 조사에 착수 했다(조세일보, 2003.6.23).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가 납세자에게 연례행사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사와 결과의 공개가 필요하다.

14) 2006.2.6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율제도는 2007년말까지 적용된다.

15) 과세자료가 쉽게 노출되는 업종의 경우는 기준경비율에 따른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나, 매입자료가 부족하고 매출액만 급증하는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유도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례는 한식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득상한배율 1.5배를 적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사례 1> 기준경비율로 적용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사례¹⁶⁾

- 업종 : 한식음식점(552101)
- 수입금액 : 120,000,000원
- 주요경비 : 72,000,000원
- 기준경비율 : 10.8% 단순경비율 : 87.4%인 경우

(1)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 : 35,040,000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20,000,000 - 72,000,000 - (120,000,000 \times 10.8\%) = 35,040,000\text{원}$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 22,680,000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120,000,000 - (120,000,000 \times 87.4\%)] \times 1.5\text{배} = 22,680,000\text{원}$

(3)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2)'의 금액(22,68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일치하는 기준경비율 하에서의 증빙수취 의무액인 주요경비를 산출하여 보았다.

$[120,000,000 - X - (120,000,000 \times 10.8\%)] = 22,680,000\text{원}$ 에서 X는 84,36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음식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70.3%이상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유인을 갖게 되어, 증빙수취에 대한 납세자의 의식이 향상되기 어렵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장에 의한 소득이 22,680,000원 이상인 경우(동업자보다 평균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는 기장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게 되어 증빙수취 유인을 저해하게 된다. 업종이 다른 경우는 주요증빙 수취비율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평균율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물론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공제율은 10%이나 100만원 한도 임)를 받게 되나 납세자의 측면에서 실제 기장수수료에 대비하여 기장세액공제가 효과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나.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이 인정되는 주요경비의 범위의 확대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비용지출 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이다. 이와 같은 주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제5항과 국세청고시 2003-36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2003.12.24)에 규정되어 있다.

16) 국세청(2003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2002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제정. 2003.4.11)자료를 인용 재구성한 것임.

-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 ②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 ③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주요경비에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주요경비의 범위를 3가지 유형의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주요경비의 증빙수취액이 수취의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경비의 증빙을 누락하여 세원이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경비의 범위를 위 3가지 유형에서 확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모두 세법상 경비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세금계산서 수수를 촉진시키고 과세표준이 양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를 수취하지 못한 나머지 경비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가비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¹⁷⁾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된다. 복식기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쉽고 편리한 장부를 보급하고 저렴한 부담으로 기장하게 하여 실질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 부여 및 기장확대를 통한 근거과세 확충을 위해 1999년도 발생소득 신고분부터 간편장부제도¹⁸⁾가 도입되었다(소득세법 제160조). 간편장부 기장자는 산출세액의 10%세액공제제도(연간 100만원 한도)가 있으며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접 배제 혜택이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20%(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가 추가로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했을 경우와 세 부담 차이는 약 33%가 된다. 물론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를 적용하며(소득세법 제81조), 국세청은 수입금액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추계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002귀속 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전산검색 하고 있다(2002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요령).

<표 3>은 기장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금액을 요약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과세구조¹⁹⁾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무기장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간이과

17) 물론 주요경비의 범위를 확대할수록 기타 경비에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증빙수취의무 주요경비가 확대될수록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론도 있다.

18) 간편장부에는 매출액, 경비지출, 고정자산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8항). 세무관련인들은 간편장부제도가 매우 쉽다고 하나 영세한 납세자들은 이도 어렵다고 하고, 사회적인 관심도 낮은 편이다. 문용환(2003)은 간편장부와 관련한 간편장부소득금액명세서와 부속서류의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19)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세액계산, 신고와 납부, 장부기장의무에서 일반과세자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중 일부는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서 기장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세자는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3항), 소득세법상 기장을 유도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는 모든 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48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기장과 주요증빙수취의무가 배제되는 단순경비율 신고제도는 폐지하고(과세관청은 결정 및 경정시 평균율로서의 판단기준으로 남겨둘 필요는 있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업종에 관계없이 축소시켜 모두 48백만원 미만으로 일치시키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장을 의무화하고 무기장시 다양한 추계과세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²⁰⁾ 또한 2006년 이후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36백만원인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대상 및 무기장가산세부과 대상기준인 48백만원과 달라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다.

〈표 3〉 기장의무자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수입금액기준)

구분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2002~2003년 귀속	2004~2005년 귀속	2006년 이후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자	1억5천만원 미만	9천만원 미만	72백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1.5억원 미만자	9천만원 미만	6천만원 미만	48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75백만원 미만자	6천만원 미만	48백만원 미만	36백만원 미만

* 소득세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 간편장부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초과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2. 수입금액 추계경정 방법의 보완

가. 수입금액(소득) 탈루의 사례

현행 기준경비율제도는 수입금액 확정을 전제로 경비측면에서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입금액 자체의 탈루가 있는 경우 경비측면의 강화만으로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없다. 물론 기준경비율제도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주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표준소득률 제도와 다른 점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으면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축소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계상여부에 대한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의해 신고한 수입금액의 적정여

20) 이와 같은 제도변화는 2000년 7월 이후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자로 흡수하여 운영하고 있듯이, 근거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연 24백만원 미만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이들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소득세법상으로도 평균소득율을 감안하면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현진권 2001).

부를 분석해 보거나 지출한 경비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도 있다.²¹⁾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과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취약분야업종에 대한 과표정상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제도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의 탈루와 비용의 허위계상의 최근의 사례를 검토하면 <표 4>과 같다.

<표 4>에서 보느냐와 같이 탈루혐의가 포착된 경우 탈루세액을 결정 및 개정하기 위한 방법은 세법규정에 따라 시행되는데, 결국은 장부가 미비하거나 허위이므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게 되어, 업종평균의 과세에 그치며 개인별 실상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해야 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은행계좌추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²²⁾ 이와 같은 추계방법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외국에서와 같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4> 소득세 탈루혐의사례

사례	내용	탈루 혐의 포착기법	관련세법
1. 수입 누락, 비용과다 계상	한방병원의 수입금액이 월 1억원이나, 시설에 비해 수입금액이 저조하고, 인건비가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다른 사업자보다 2배 이상 경비 계상함. 최근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	1. 시설대비 수입누락 2. 동업자와의 권형 3. 소비금액 대조	소득세법시행령 144①1
2. 비용과다계상	성형외과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정규증빙서류에 수취금액이 적으며, 비용의 과다계상	정규증빙금액 비율이 저조하고 비용과다 계상	소득세법시행령 144①4마
3. 수입누락	영어학원의 강사가 17명이고,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나 수입금액은 190백만원으로 과소신고	인건비, 임차료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	소득세법시행령 144①4나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2003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중점관리 일부수정. 2003.5.21

21)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기준경비율 제도는 정부결정, 추계결정 및 결정의 한 방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22) 서울행정법원. 2000구42401(2003.5.17 조세일보에서 인용). 이 판결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관련 판결이나 국세청 세무조사시 소득세와 부가세 등 관련세목은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조사되므로(국세청훈령제 1606호, 조사사무처리규정. 2006.3.6. 제58조-(63조) 소득세법에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세무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정보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여야만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나, 향후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

나. 주요국가의 소득추계기법의 유형

소득세 추계과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순자산증가법, 소비액법²³⁾, 은행예금잔액법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 미국의 경우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장부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Internal Revenue Code Sec. 6001) 주로 사용하는 소득추계방법을 최근의 사례로 구성하여 예시하였다 (Gormley, S. P. and T. M. Porcano 1999). 이 세가지 방법은 실무사례별로 적용하나²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²⁵⁾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납세자는 미국세청(IRS)의 소득추계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할 수 있으나, 법원은 IRS의 결정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탈루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제시하거나, 탈루소득의 원천을 정확하게 입증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며 중요한(substantial) 부분을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본다(Gibson, B. T and A. Maher 2005).

① 순자산증가법

납세자의 기초와 기말의 순자산을 비교하여 차이를 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공제불능 비용을 가산하고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표 5〉 순자산증가법의 소득추계

(단위 : 달러)

	1994.1.1	1994.12.31	1995.12.31	1996.12.31	1997.12.31
총자산	\$330,568	\$502,423	\$570,027	\$350,432	\$281,967
총부채	(53,920)	(70,173)	(64,598)	(51,563)	(45,024)
순자산	276,648	432,250	505,429	298,869	236,943
기초순자산	—	(276,648)	(432,250)	(505,429)	(298,869)
순 증가	—	155,602	73,179	(206,560)	(61,926)
개입생활비	—	44,111	46,812	319,358	136,977
재계산 과세소득	—	\$199,713	\$119,991	\$112,798	\$75,051

23) 소비지출 추정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과세방법은 고급주택이나 별장, 골프 스포츠회원클럽, 요트 등 고급생활 수준의 지표가 되는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최소유지비, 고급주택 거주자는 한은이나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대비 주거비 비중을 자료를 참고로 하여 소득수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4) IRS는 세무감사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시 고려해야할 적합한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C. Gibson and P. R. Fink 1999)

25) 기타의 추계방법으로는 비율법(Percentage Mark-up)이 있으며, 주류업에 주로 이용된다(Shafiroff 1989).

이 방법에서는 조사대상연도 중 최초연도의 순자산확정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과세관청은 합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납세자가 새로운 증거로 반박할 수 있으며, 법원이 최종결정하게 된다. <표 5>에서 최종 재계산된 과세소득의 합계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② 현금지출액법

이 방법은 IRS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며 납세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사례에서 미 국세청은 개인공제 \$2,450 과 자영업자 공제 \$4,731 및 표준공제 \$3,800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금액인 \$61,750을 소득으로 추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신고소득과 생활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⁶⁾

<표 6> 현금지출액법의 소득추계

	1994 연도
주택 구입 선급금	\$12,862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500
주택할부금	2,000
1994에 납부한 1993연도세금	5,800
가구	12,565
귀금속 구매	12,960
세무조정비용	1,800
스포츠카 지출	6,245
개인생활비(노동부 추정 1인 생활비) ²⁷⁾	17,999
총 소득 추계액	\$72,731

③ 은행예금잔액법

IRS는 이 방법을 적용할 때 납세자의 예금잔액 중 비과세원천의 예금(증여, 자본이득)을 차감하고 기타의 보고하지 않은 과세소득을 추정하여 최종 과세소득을 추정한다.

1996연도에 납세자의 예금은 \$76,000이었으며 \$46,000은 임금으로 나머지는 원천이 불분명하다. 납세자는 최소한의 증빙(자본이득 및 증여)을 제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과세소득으로 추계되었다.

26) 서희열·허양원(2000)과 김완석(2002)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요건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적용상의 한계점도 기술하고 있다.

27)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발표 가구소비실태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5년마다 작성되며 연간소득, 가계지출, 저축 및 부채, 가구내구재, 부동산에 대한 조사통계표이다.

〈표 7〉 은행예금잔액법의 소득추계

	1996 연도
저축예금구좌의 임금	\$46,000
당좌예금구좌의 기타원천의 예금	30,000
총 예금잔액	76,000
차감 : 자본이득	4,000
차감 : 증여	6,000
가산 : 비보고 소득(예금하지 않은 것)	26,000
총 추계소득	\$92,000
차감 : 보고된 과세소득	35,000
과소 신고소득	\$57,000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시행하는 위의 3가지 추계방법을 모두 도입하고 있으며, 효율법 및 비율법과 기타의 방법 등 다양하게 추계방법을 인정하고 있다.²⁸⁾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표준소득율법도 있으나, 이는 표본조사의 결과 업종별 평균비율이므로, 표준소득율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완식 2001). 또한 우리나라에서 간편장부대상자 중 일부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나, 일본의 표준소득율법은 소득추계의 간접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으로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직접신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 우리나라에서의 소득(수입)추계기법의 개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서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동업자권형방법, 본인율법 및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순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준경비율법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

소득세 추계과세 방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추계과세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경비율법 대신에 외국의 추계방법 중 순자산증가법, 소비액법, 은행예금잔액법 등을 신중하게 도입하고 기준경비율은 납세자의 신고기준이 아닌 국세청 내부 참고자료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추계기법들을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소득추계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득세 추계과세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세를 위해 국세통합시스템(TIS)²⁹⁾의 확충과 적절한 활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 이와 같은 추계방법은 일본에서는 昭和25년이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金子宏 2003)

29) 국세통합시스템(TIS)은 세원관리의 과학화, 사무관리자동화, 납세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1997년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TIS는 전국세무관서에서 분청 전산실의 주전산기로 온라인송부되는 모든 과세

3. 장부기장 유인확대와 벌칙제도의 강화

가.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의 확대와 성실납세자제도 도입

기장을 유도하려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하여 주고 있으나 세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혜택이 미미한 실정이다.³⁰⁾ 기장세액공제를 현행과 같이 산출세액의 10%기준을 인상하거나 정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세무기장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큰 금액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기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장부기장이 힘들어 추계신고하는 경향이 많아, 국세청에서는 1999년부터 쉽고 간편하게 기록될 수 있는 간편장부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간편장부 기장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대하는 의도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는 매입매출장의 기장의무에서 증빙을 보 관만 하더라도 기장으로 간주하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을 가지고 있지만, 간편장부제도에서는 증빙보관은 물론 기장의무를 엄격히 규정(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하고 있어, 그 기장의무에 대한 개념을 다소 달리하므로 부가가치세 관련문서에서의 간편장부 의무에 대한 이해와 유관 부서간의 충분한 지원도 필요하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부담으로 일반과세로의 전환을 기피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³¹⁾, 단기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

한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정기세무신고 및 세무조사의 결과 성실납세가 밝혀진 경우 ‘모범성실납세자’로 분류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홍보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³²⁾ 일본의 경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청색신고제도(일본 소득세법 제143조)를 두어 복식부기원칙에 따른 기장 및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³³⁾ 청색신고 특별소득공제(35만엔), 필요경비특례(충당금, 준비금 등), 현금주의 채택허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를 실무에 이용하기 쉽도록 세적, 신고, 조사, 자료, 징세, 민원 등 기능별시스템에 수록하고 이를 다시 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국세청). 세원관리의 종합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료와 재산보유 자료를 비밀보장원칙과 세원추계의 합리성이 상호 보완되어 적절히 활용한다면 탈루세액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0) 2001귀속 종합소득 신고자의 기장세액공제는 총 44,538백만원이다. 소득세 납세인원 중 간편장부신고자는 317,000명으로서 1인당 기장세액공제는 연간 139,930원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평균기장수수료는 수입금액모에 따라 다르나 실무상 월10-30만원에 이른다(세무사보수규정은 1999.2.5에 폐지되어 현재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1) 박성배·이규섭(2002)은 외식사업자중 79%가 간이과세자이며, 사업장규모로 볼 때 간이과세기준 48백만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작아, 간이과세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32) 연 공급대가가 1.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고 최저신장률이상 신고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경감조치가 있었으나 2002.12 폐지되었다(중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33)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일정수준의 기장을 계속함과 동시에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일본의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유시권 1997)

나. 장부기장과 조세범처벌

탈세의 개념은 협의적 탈세와 광의적 탈세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협의적 탈세의 개념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한 포탈법에 해당하는 범칙 행위를 의미한다(서희열·허양원 2000).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조세범처벌법 제9조). 광의에 있어서 탈세의 개념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소케 하는 일체의 행위로 본다. 탈세에 대한 처벌과 납세자의 범죄인식도 엄격하지 않은 현실이며, 특히 탈세의 경우는 장부가 거의 기장되지 않고, 기장된다 하더라도 허위의 경우가 많다. 소득세법상 추계신고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무기장가 산세가 20%³⁴⁾부과되지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는 규정은 적용의 현실성이 희박하다.

장부의 비치누락 및 무기장, 무신고에 대한 각국의 가산세 이외의 벌칙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8>에서는 조세포탈법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는 제외하였다.

〈표 8〉 각국의 조세범처벌규정(장부기장관련)

	위반내용	벌칙유형	관련근거
한국	①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 기장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1항
	② 장부 및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간후 5년내 소각, 파기, 은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2항
미국	고의로 법적장부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25,000(법인은 \$100,000임)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양벌가능)	Internal Revenue Code Sec. 7203
일본	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기한내 무신고 사업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벌금 부과	일본 소득세법 제241조 일본 소비세법 제66조
	② 청색신고납세자와 간이기장의무자(전년 사업소득300만엔 초과자)가 허위장부 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부과	일본 소득세법 제242조
독일	조세질서위반행위(무기장, 허위기장)	중과실의 경우 10만 마르크(기타의 경우는 1만 마르크)벌금	독일 조세기본법 제378조, 379조

34)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가산세율은 10%였으나 2004년부터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한 20%로 인상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에 비해 무기장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도 않으며,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도 거의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규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고³⁵⁾ 예외없이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장기적으로 폐지함과 더불어 장부기장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V. 연구의 요약 및 결론

2002귀속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를 통하여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한 추계경정결정은 비용증빙을 근거로 하는 추계소득방법으로서 실제비용과 추계경비율을 혼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준경비율법은 추계방법이 매우 간편하고 납세의무자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오히려 무기장을 조장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특히 선진외국과 달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해 실질소득을 반영하였는지 관계없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음성탈루소득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계과세제도의 일종인 기준경비율제도가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신고납부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거과세 및 소득세 납세자간의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선시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① 기준경비율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축소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06년 현재 업종별로 36백만원~72백만원 이상 기준으로 되어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점차 축소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소득세 수입금액 확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와 달라 증빙의 발행 및 수취의무관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금액을 축소시키고 가급적 간이과세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48백만원으로 하는 것이 납세이행비용이 적게들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과세자의 기준도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인 24백만원으로 낮추어,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액이라도 납세하도록 하여(징세비용을 초과한다면) 납세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 기준경비율제도는 근거과세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일정유예기간 후에는 폐지하여 기장에 근거한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응능부담의 조세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현행 단순경비율제도를 기준경비율제도

35) 재정경제부는 조세범처벌법개정안(공고 1999-99)을 마련하여 무기장에 대한 형량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로, 장부의 소각·파기에 대해 국세기본법의 전산매체장부를 포함하여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기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으나 입법화되지 않았다(이천현 2000).

로 전환하여, 기장 전단계의 증빙수취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조사, 결정, 고시는 다양한 업종연구를 통해 계층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나, 결국은 표본 조사결과와 평균적인 개념으로서 개별납세자의 실상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제도이다.

- ② 현행 소득상한배율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05년귀속분 신고의 경우 단순경비율의 1.7배 이상만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나, 이는 증빙수취의무를 부여한 기준경비율제도를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7배로 정한 명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호황업종의 경우 납세자는 기준경비율적용을 회피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기장유도와 증빙수취권장을 위한 기준경비율제도의 본질이 훼손되므로 소득상한 배율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③ 기준경비율제도의 주요경비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기준경비를 3가지에 한정하지 말고 정규 증빙을 수취한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물론 실무적으로 기준경비를 확대할수록 나머지 경비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비례적으로 축소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준경비율을 폐지하는 측면에서 주요경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금액 추계방법을 다양하게 법령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 이외에 동업자권형법, 본인 직전소득률법,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방법들 외에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자산증가액과 소비, 예금증가액을 기준으로 추계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개발하여 법령에 명문화하고 세무조사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하여 개인별 재산자료를 축적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기준경비율제도가 의도한 바대로 운영된다 하여도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료에서 부가율을 조정하는 수준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도시행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상화 즉, 공평과세 취약분야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장유인을 확대해야 하며 무기장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세무조사 제도는 추계과세자보다는 기장과세자에 집중되어 왔다. 기장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무기장, 추계과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무기장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고(간이과세자 제외), 우선적으로 수입금액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나, 무기장자 전원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기도 현실성이 없으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가 존재하는 한 조세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경비율제도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결정과 달리 주요경비의 증빙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결정과정이 복잡하므로 조사인력이 부족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장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득세법상은 추계과세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과 모순된 규정으로 보이며, 유명무실한 제도는 현실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무기장에 대한 처벌은 외국에 비하여 엄격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액 기장세액공제제도 도입과 간편장부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세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혜택이 미미한 실정이다. 기장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10%에서 인상하거나 정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세무기장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기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에 의한 신고하는 등 성실신고 납세자에게는 일본의 청색신고제도와 같이 성실납세자로 분류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기장문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경비율 신고자에 대해 간편장부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더욱 간단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무자료 표본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국세행정자료의 공개 확대와 더불어 조세공평과 탈루소득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활발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K C I

참고문헌

- 국세청. 2001.2. 기준경비율제도 해설.
 _____. 2003.5.21. 2003 소득세 신고관련 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중점관리
 _____. 2003 소득세확정신고 관리요령.
 _____. 2003.4.11. 2003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2002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제정.
 _____. 2005.12.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요령.
 _____. 2006.4.13. 2005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국중호. 2002. “추계과세제도 및 기장유인제도가 신고납세와 과표 양성화에 미치는 효과”. 세무학연구 제19권 제1호 : 23-43.
 김완석. 2002. “소득세추계과세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4집 제1호 : 355-379.
 _____. 2001. “추계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연구보고서 제33집, 문용환. 200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와 그 부속서류의 합리적개정”. 국세월보 2003년 3월호 : 159-174.
 박성배 · 이규섭. 2002.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성실납부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9권 제2호 : 231-265.
 박찬웅. 2005. “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제30권 제1호 : 155-188.
 박춘래 · 김종원. 2003.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기간별 공평성 분석”. 회계저널 제12권 제1호 : 115-152.
 서희열 · 허양원. 2000. “음성탈루 소득의 추계과세제도의 도입방안”. 세무학연구 제15호 : 271-302.
 성명재 · 전영준. 1998.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98-2. 한국조세연구원
 유시권. 1997. “한·일 국세행정의 비교·평가”.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97-10 이천현. 2000. “우리나라 조세법제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한양법학제11집 : 213-256.
 이태로 · 안경봉. 1999. 「조세법강의」, 박영사, 1999, pp.238-239.
 정운오. 1995.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이론적연구”. 회계학연구 제20권 제3호. : 23-47.
 한국세무사회. 2003.5.16. “기준경비율제도 관련건의”, 세무사보 제366호
 현진권. 2001. “한국의 소득세정책”, 제2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 97-118.
 Gibson, C. and P. R. Fink. 1999. “Financial status audits under the IRS Reconstructing and Reform Act of 1998”. *The National Public Accountant*. Vol. 44(2) : 54-57.
 Gibson, B.T and A. Maher. 2005. “Tax Violations”. *The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Vol. 42(2) : 943-984.
 Willis, E., W. H. Hoffman, D. M. Maloney and W. A. Raabe. 2003. *West Federal Taxation(Comprehensive Volume)*. Thomson
 Gormley, S. P. and T. M. Porcano. 1999. “Reconstruction of income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axes*. Vol. 77(4) : 48-60.
 Shafiroff I. L. 1989. *Internal Revenue Service Practice and Procedure Deskbook*, 2nd edition. Practising Law Institute. New York
 金子 宏. 2003. 租税法. 弘文堂.
 薺藤 明. 1998. 税法学の 基礎理論. 中央經濟社.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ling Tax Return under Estimation of Income Taxes System

Park, Taeseung*

〈Abstract〉

Almost half of income taxpayers file tax returns based on the 'estimation of income tax by tax authorities' system rather than by bookkeeping. Some argue that the estimation of income tax system cause inequality between taxpayers. The tax authority adopted the basic expense ratio system instead of standard expense ratio system beginning in 2002.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of new system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First, tax return by the estimation of income tax system should be abolished (except for the very small taxpayers). Scope of basic expenses should be expanded. The simple expense ratio using the upper limit of income tax reporting should be abandoned.

Second, taxable income reconstruction techniques should be developed. Net worth method and bank deposit method and other reasonable methods can be adopted instead of basic(simple) expense ratio method.

Third, criteria for simple bookkeeping system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and basic expense system under the income tax law should be conformed to reduce compliance costs and encouraging self-bookkeeping. A fixed amount of bookkeeping tax credit along with the percentage of income tax payable, should be also allowed. Tax investigation for taxpayers with no books and records be more enforced and small taxpayer group with voluntary book-keeping should have more tax benefits.

<Key words> tax return by estimation of income tax, basic(simple) expense ratio, self-bookkeeping, tax credit for bookkeeping, taxable income reconstruction techniques

* Associate Professor, Kyungbok College, taseung7@yahoo.com, 018-278-0148